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86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엄셋별 의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는 병의 유무와 진행상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2)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23. ~ 2024. 8.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2. 소아·청소년 당뇨병 진단 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소아·청소년 당뇨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4.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